

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



○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?

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,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의 소득·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'부양의무자 기준'이 '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.

* 다만, 고소득(연 1억, 세전)·고재산(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

○ 선정기준

생계급여 수급(신청)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

(단위: 원/월)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'21년	548,349	926,424	1,195,185	1,462,887	1,727,212	1,988,581
'22년	583,444	978,026	1,258,410	1,536,324	1,807,355	2,072,101

○ 지원내용

최저보장수준(=선정기준)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

○ 신청장소

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주민센터

*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

○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?

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번)

거주하는 지역의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문의

※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'복지로' 홈페이지에서 확인

